

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3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7. 4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5. 7. 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5. 7. 16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복지지원과장 천미옥)

가. 제정이유

여성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와 직업 훈련 교육, 활동공간 제공 등을 위한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설치에 따라,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,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2)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3) 시설의 사용,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4)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5) 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6)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3) 합 의: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8305(2025.5.13.)]
- 4) 기 타

- 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896호
 - 예고기간: 2025. 5. 12. ~ 6. 1.(20일간)
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라) 신구조문 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불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○ 제출 사유

-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, 고성군 여성친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(안 제1조~제2조) 조례의 제정 목적에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여성친화공간 명칭은 ‘담소랑’ 으로, 위치는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10-1로 특정하였음.
- (안 제3조~제4조) 기능 수행, 시설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의 능력개발, 경제자립,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과 여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지원 등 기능의 범위를 정하고, ‘담소랑’ 시설물 내에 강당, 교육실, 사무실, 아이돌봄실 등 공간 구성을 명시하였음.
- (안 제5조~제7조) 시설의 사용, 사용료,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, 시설의 이용 시간은 평일 근무 시간과 예외 사항을 두었으며, 사용자가 신청하고 군수가 사용 결정과 통지하는 과정에 관한 절차를 정하였음.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자의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을 별표 1에, 사용료 감면 대상을 별표 2에 한정하며, 별표 3에 사용료 반환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였음. 안 제7조에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시설의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음.

- (안 제8조) 강사초빙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 강사초빙과 예산 범위에서 강사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(안 제9조)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관리·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‘담소랑’의 개관을 앞두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고성군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 제공, 교육 접근성 향상을 통하여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7. 1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